

# Awana 사역 동의서

1. 귀 교회는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아래 제시된 원칙에 의거하여 귀 교회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Awana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합니다.
2. 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, 귀 교회는 본 동의서를 한국 Awana에 제출하고 이를 1년마다 재등록함으로써 Awan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3. 귀 교회의 Awana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귀 교회의 사역으로 인정됩니다. 따라서 귀 교회가 실시하는 Awana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, 예를 들어 게임 규칙에 따른 참가자들의 안전 및 Awana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자원봉사자, 교사 및 관련자들을 선정하고 훈련하고 감독하며, 그들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, 기타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귀 교회에 귀속되어 있습니다. 귀 교회와 한국 Awana는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.
  - a. 쌍방은 상호 독립적인 공급자(한국 Awana) 및 구매자(귀 교회)의 관계이므로, 한국 Awana는 귀 교회에 제공하는 각종 물품,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관련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  - b. 귀 교회의 Awana는 한국 Awana에 소속된 회원이나 부서가 아니며, 귀 교회의 자체적이며 독립적인 클럽입니다.
  - c. 귀 교회의 Awana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원 봉사자 및 교사들은 전적으로 귀 교회의 소속 인원이므로 한국 Awana 소속 인원으로 보지 않습니다. 귀 교회는 또한 한국 Awana가 제공하는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Awana 사역에 전적으로 필요 충분할 것이라거나, 혹은 Awana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한국 Awana가 특정 자격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.
4. 귀 교회는 귀 교회의 Awana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모든 권리(claims), 손해(damages), 책임(liability)로부터 한국 Awana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귀 교회 자체 내의 권리, 즉 귀 교회 소속 교인들, 교회 지도자들, 혹은 Awana 프로그램 참가자와 관련자들의 권리 뿐만 아니라, 귀 교회 외부의 권리도 해당됩니다.
5. 본 동의서는 특별한 서면 통고 없이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한국 Awana는 귀 교회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고 등록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
6.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 교회는 유효기간 동안 한국 Awana로부터 Awana 프로그램의 교재 및 물품,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, Awana 프로그램의 교재를 사용할 권리와 아래 9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Awana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. 본 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 Awana는 귀 교회에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.
7. 한국 Awana는 Awana 프로그램에 관련된 물품과 교재, 훈련에 대해, 그리고 귀 교회를 포함하여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련 행사 및 활동들의 참가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 (귀 교회가 한국 Awana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, 구입 총액에는 부가가치세 또는 관련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귀 교회는 한국 Awana와의 거래에서 발

생하는 관련 세금 등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, 한국 Awana는 귀 교회가 물품 주문 시 귀 교회가 비과세 기관임을 입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세금에 관하여는 귀 교회에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. 따라서 귀 교회는 한국 Awana로부터 구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세금 등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)

8. 한국 Awana는 Awana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교회들이 사역에 임함에 있어서 일관적이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귀 교회는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Awana 프로그램의 원칙과 정책을 준수할 것과 Awana 유니폼과 시상품을 포함하여 Awana 프로그램의 물품을 사용하기로 동의합니다. 귀 교회는 Awana 프로그램의 교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가감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하여야 합니다.
9. 국제 Awana(Awana International)에서 제공하는 Awana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"Awana(Awana)"의 명칭에 국한하지 않고 (Awana 재산으로 언급될 수 있는) 모든 지적 재산권, 상표권, 의장권 및 이와 유사한 재산권은 전적으로 국제 Awana의 소유이며, 귀 교회는 단지 본 동의서의 유효기간 동안 그 사용을 허락받은 것입니다. 이러한 사용 허락은 귀 교회의 Awana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에 해당됩니다. 귀 교회의 Awana 사역을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 광고, 또는 교계지, 지역 신문, 인터넷 웹 사이트, 전화번호부에 귀 교회의 Awana 프로그램을 게재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. 그러나 귀 교회는 국제 Awana가 소유한 Awana 소유물을 재생산 변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의복, 자기(사기)제품, 도자기 제품, 보석, 기타 개인 물품을 제작하여서는 안 됩니다. 귀 교회는 귀 교회의 Awana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목적 이외에 각종 출판물, 논문, 기타 저작물에 Awana 교재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정당한 허가 없이 Awana 소유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 귀 교회는 또한 본 동의서의 효력이 만료한 이후 또는 본 동의서의 효력을 간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Awana 소유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10.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용합니다. 만약 본 동의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, 쌍방은 본 동의서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, 혹 그러한 분쟁이나 다툼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성경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해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. 만약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면 대한민국 법령 하에 일반적인 사법절차를 따릅니다.
11. 본 동의서는 귀 교회에서 부여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귀 교회를 대표하는 개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.

**본인은 본인의 소속 \_\_\_\_\_ 교회를 대표하여  
상기내용에 동의합니다.**

**서명 :** \_\_\_\_\_  
(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께서 서명하여 주십시오.)

**날짜 :** \_\_\_\_\_

**[이 서류를 한국 Awana 본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.]**